

금호동 마을공동체 공간 「모(母)처럼 좋은 방」 운영관리 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 성동구와 “모처럼 좋은 방 운영위원회”(이하 ‘모방위원회’라 한다.)는 금호동 마을공동체 공간 “모처럼 좋은 방”(이하 ‘모방’이라 한다.)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성동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인 모방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시설 현황) 모방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치: 성동구 난계로 63 (금호동1가 132-2)
2. 주 구조: 경량 철골 가설 건축물 (지상 3층)
3. 대지면적: 32.2㎡, 연면적 45.54㎡
4. 용 도: 마을사랑방(공유서가, 교육프로그램 운영, 공간대여, 마을카페 등)

제3조(운영주체) ① 모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(단체)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모방위원회는 20명 내외로 정기회의시 및 필요시 구성한다.

※ 단, ‘모방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모임의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모방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자율 규정에 의해 결정한다.

제4조(운영원칙) ① 모방은 공익활동에 사용해야 하며, 정치·종교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, 권리의 양도, 대여 등을 할 수 없다.

② 모방 운영과 관련하여 타 기관(단체)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성동구의 의견에 적극 협조한다.

③ 모방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5조 (운영계획 등) ① 모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한다.

1. 주민 소모임을 위한 공간 개방
 2.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
 3. 공유 도서관 등 공유 공간으로 개방
 4.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(공모사업 공간 활용, 벼룩시장 운영 등)
- ② 모방위원회는 모방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1월중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공간운영 사업 평가서를 성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설관리) ① 모방 시설은 모방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모방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
- ② 공간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는 모방위원회 자체 경비로 조달하여 사용하고, 성동구는 시설물 관리나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성동구는 시설에 대한 보험(영조물보험, 재해보험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체경비 조달) ① 모방 운영에 따른 수익은 모방 관리 및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- ② 모방위원회는 모방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경비 조달 등 재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기간 및 협약내용 변경) ①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협약을 유지한다.

- ② 본 협약서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운영관리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 1.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 2. 제5조제2항에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 검사 결과 공간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태만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 3. 그 밖에 공익상 협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제10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성동구와 모방위원회가 상호 서명·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,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이 협약과 관련

하여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성동구와 모방위원회가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1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동구와 모방위원회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.

2016년 6월 일

성동구청장

정원오 (인)

모처럼 좋은 방 운영위원회

위원장 최수정 (인)